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24
----------	-------

발의연월일 : 2026. 9. 29.

발 의 자 : 박민규 · 윤준병 · 민병덕
김용만 · 박상혁 · 박정현
강준현 · 손 술 · 이정문
이강일 · 임문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마약 유통, 불법 온라인도박, 신종스캠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민생침해범죄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비대면·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계속하여 진화하고 있으며, 범죄수익이 대포통장, 가상자산지갑 등을 활용하여 순식하게 이전·은닉됨에 따라 피해자금의 회수가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범죄자금의 은닉을 막고 피해자금을 신속히 회수하려면 몰수·추징 보전 등 정식 사법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이용의심계좌에 대하여 행정명령 등을 활용한 신속한 거래정지가 필요함. 이에 의심거래와 관련한 정보가 집중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중대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가상자산주소에 대한 선제적 거

래정지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대민생침해범죄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전기통신을 활용한 신종피싱, 테러자금조달 범죄 등을 “중대민생침해범죄”로 정의함.

나. 중대민생침해범죄 이용 추정 계좌·가상자산주소에 대한 임시정지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수사기관의 장이 중대민생침해범죄등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가상자산주소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에 입·출금 등을 7일간 임시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임시정지의 계속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정지기간을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중대민생침해범죄 관련 계좌·가상자산주소에 대한 거래정지 근거 마련(안 제11조의3 신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된 계좌·가상자산 주소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에 최대 180일간 거래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거래정지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11조의5 신설)

임시정지·거래정지 조치된 계좌·가상자산주소의 명의인이 금융정

보분석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의제기를 수용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에게 계좌·가상자산주소에 대한 정지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도록 함.

마. 거래정지등으로 손실을 입은 선의의 국민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마련(안 제11조의6 신설)

범죄혐의가 없는 선의의 국민이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거래정지 등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중대민생침해범죄등”이란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생계유지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범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의 범죄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범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의 범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범죄

다. 「형법」 제247조의 범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의 범죄,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및 제48조제3호·제4호의 범죄

라.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범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 1)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범행한 경우
-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선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방법으로 범행한 경우
-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마.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범죄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

- 1)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2)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3)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4)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범죄에 관계된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
의 자금세탁행위

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제2항의
범죄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항의 범죄

제3조제1항제2호 중 “제4조·제4조의2·제5조·제5조의2·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8조”를 “제4조·제4조의2·제5조·제5조의2·제5조의3
·제5조의4·제8조·제11조의2·제11조의3 및 제11조의5”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거래등의 상대방과 관련하여 제11조의3에 따른 거래정지 필
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제5조의4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의2에 따른 임시정지(그 연장을 포함한다) 및 제11조의3에
따른 거래정지(그 연장을 포함한다) 조치 및 그 해제에 관한 자료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를 “불법재
산·중대민생침해범죄등·자금세탁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
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를 “불법재산·중대민생침해범죄등·자금
세탁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3. 제11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지받은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10조의2제1항 중 “제10조제1항제3호”를 “제10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보칙”을 “범죄 계좌등에 대한 거래정지등”으로 한다.

제5장에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한 계좌·가상자산계정에 대한
임시정지) ① 수사기관의 장은 특정 계좌·가상자산계정(당해 계좌
·가상자산계정 또는 계좌·가상자산계정 명의인으로부터의 자금의
이체, 송금 또는 출금 등으로 자금·자산이 이전된 것으로 판단되는
계좌·가상자산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1조의6까지 및
제13조에서 같다)이 중대민생침해범죄등(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전
기통신금융사기는 제외한다)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한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해 긴급한 경우 해당 계좌·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에 이체, 송금, 입·출금 또는 가상자
산의 이전 등 거래를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
정지”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중대민
생침해범죄등과 관련된 자금·자산 및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이를 함께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가상자산계정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정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은 다른 금융회사등의 계좌·가상자산계정으로 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된 자금·자산이 송금·이체 또는 이전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시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요청의 대상이 된 계좌·가상자산계정에 대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중대민생침해범죄등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계좌·가상자산계정에 대하여 임시정지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임시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1. 해당 계좌·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
2. 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된 자금·자산이 송금·이체된 계좌·가상자산계정이 있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3. 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지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4. 제1항에 따라 임시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

5. 금융정보분석원장

⑤ 제4항에 따른 임시정지 조치의 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하여 임시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임시정지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30일의 범위에서 2회에 한정하여 임시정지 조치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요구의 대상이 된 계좌·가상자산계정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임시정지 조치를 연장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임시정지 조치의 연장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1. 해당 계좌·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

2. 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된 자금·자산이 송금·이체된 계좌·가상자산계정이 있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3. 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지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4. 제1항에 따라 임시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

5. 금융정보분석원장

⑦ 수사기관의 장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에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통지

를 유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통지를 유예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3항에 따른 요청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임시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7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제5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 임시정지 조치 또는 그 연장 조치를 하여 계좌·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임시정지의 대상, 범위, 요건,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한 계좌·가상자산계정에 대한 거래정지)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거래등이 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대민생침해범죄등으로 인한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하여 금융거래등을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등이 일어난 계좌·가상자산계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에 이체, 송금, 입·출금 또는 가상자산의 이전 등 거래를 정지하는 조

치(이하 “거래정지”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하여 거래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30일의 범위에서 거래정지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정지의 총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요구의 대상이 된 계좌·가상자산계정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거래정지 조치 또는 조치의 연장을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거래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1. 해당 계좌·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

2. 금융정보분석원장.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거래정지 요구가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지받은 내용을 해당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 또는 조치의 연장과 관련하여 통지의 유예 및 금융회사등 종사자의 누설 금지에 관하여는 제11조의2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시정지”는 “거래정지”로 본다.

⑥ 수사기관의 장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임시정지 조치된 계좌·가상자산계정이 중대민생침해범죄등에 이용된 계좌·가상자산계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해당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거래정지 조치(조치의 연장을 포함한다)된 계좌·가상자산계정에 대하여 검사에게 몰수보전, 기소 전 몰수보전, 추정보전 또는 기소 전 추정보전을 청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⑧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7항에 따른 몰수보전, 기소 전 몰수보전, 추정보전 또는 기소 전 추정보전의 청구가 있었고, 법원이 해당 청구를 기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 단서 후단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의 총 기간이 1년이 될 때까지 제3항 단서 전단에 따라 추가적으로 거래정지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⑨ 금융회사등이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요구에 따라 거래정지 조치 또는 조치의 연장을 하여 계좌·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거래정지의 대상, 범위, 요건,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거래정지등 이후 압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11조의2에 따른 임시정지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거래정지(이하 “거래정지등”이라 한다)가 된 계좌·가상자산계정에 대한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의5에 따라 거래정지등이 해제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4. 질권(質權)의 설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된 계좌·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과 해당 계좌·가상자산계정이 이용된 중대민생침해범죄등의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의5(거래정지등의 해제 및 이의신청)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의2제4항·제6항 또

는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한 금융회사등에 해당 조치의 일부나 전부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일부나 전부의 해제를 요구하여야 한다.

1. 거래정지등을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이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
2. 거래정지등의 기간이 도과한 경우(거래정지등이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연장기간이 도과한 경우를 말한다)
3. 제4항에 따른 명의인등의 이의신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용하여 그 결과를 명의인등에게 통지한 경우
4. 거래정지등의 대상이 된 계좌·가상자산계정이 불법이익 은닉에 사용된 계좌·가상자산계정이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소명되는 경우
5. 거래정지등의 대상이 된 계좌·가상자산계정 내의 자금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거나 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소명되는 경우
6. 그 밖에 거래정지등을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요구의 대상이 된 계좌·가상자산계정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거래정지등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거래정지 조치 해제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1. 해당 계좌 · 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
2. 금융정보분석원장(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계좌 · 가상자산계정에 대해 거래정지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3.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지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4. 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된 자금 · 자산이 송금 · 이체된 계좌 · 가상자산계정이 있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③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거래정지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계좌 · 가상자산계정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조치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거래정지 조치 해제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거래정지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2. 거래정지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3. 거래정지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질권(質權)이 설정된 경우
4. 거래정지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계좌 · 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과 해당 계좌 · 가상자산계정이 이용된 중

대민생침해범죄등의 피해자 간에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상자산계정에 예치된 금액 중 중대민생침해범죄등의 피해금으로 다툼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거래정지등의 대상이 된 계좌·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명의인등”이라 한다)는 거래정지등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등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를 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을 받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제11조의2에 따른 임시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또는 임시정지 기간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명의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거래정지등의 해제 및 이의신청의 절차,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6(거래정지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거래정지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거래정지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계좌·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으로서 해당 거래정지등의 원인이 되는 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하여 법원의 무죄판결 확정, 검사의 혐의없음·죄가 되지 아니함·증거가 없음의 불기소처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등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
2. 제1호의 명의인이 아닌 자로서 제1호에 따른 거래정지등의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해당 거래정지등의 원인이 되는 중대민생침해범죄등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거래정지등의 해제를 안 날부터 3년, 거래정지등의 해제일부터 5년간(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판결·처분·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판결·처분·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③ 제11조의2 또는 제11조의3에 따라 거래정지등 조치가 이루어진 계좌·가상자산계정 또는 그 명의인에 대해 금전채권 또는 기타 재산상의 청구권을 갖는 자는 해당 계좌·가상자산계정을 개설·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해 거래정지등의 해제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⑥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보상금의 산정·지급·통지·환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7(거래정지등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중대민생침해범죄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거래정지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거래정지등 전담부서(이하 이 조에서 “거래정지등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거래정지등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금융회사가 보고한 정보에 대한 분석
2. 제11조의2에 따른 임시정지의 계속 필요성 검토 및 임시정지 조치의 연장 요구
3. 제11조의3에 따른 거래정지의 필요성 검토 및 거래정지의 요구 및 연장,
4. 제11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검토, 거래정지등의 해제 요구
5. 제11조의6에 따른 손실보상의 검토 및 처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6. 제13조에 따른 거래정지등과 관련한 금융회사등 및 수사기관의
장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7. 그 밖에 중대민생침해범죄등 대응 및 거래정지등에 필요한 업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거래정지등 전담부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1조의2에 따른 임시정지, 제11조의3에 따른 거래정지 및 제11
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분석원장 소속으로 거래정지심의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거래정지심의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장과 거래정
지등 전담부서의 장을 포함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5명 이
내로 구성한다.

⑥ 그 밖에 거래정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및 운영 등에 대
하여는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 제13조”를 “정보, 제11조의2부
터 제11조의6까지에 따른 임시정지·거래정지·이의신청·손실보상과

관련된 정보, 제13조”로, “다른”을 “이 법에서 별도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이 법에서 별도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으로, “정보, 제13조”를 “정보,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에 따른 임시정지·거래정지·이의신청·손실보상과 관련된 정보, 제13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1항제3호”를 “제10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에 따른 임시정지, 거래정지, 이의신청 및 손실보상에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금융회사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에 따른 거래정지, 임시정지, 이의신청 및 손실보상에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수사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사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⑥ 금융회사등, 금융정보분석원장, 수사기관의 장은 제11조의2·제11조의3·제11조의5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대민생 침해범죄등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가상자산계정, 그 거래 내역 및 명의인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유분석기관”이라 한다)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⑦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6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자신이 분석·생성한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1조”를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가상

자산계정 등에 대하여 제11조의3에 따라 거래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의 채권에 관한 소멸 및 피해 환급 절차 등과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선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 까지, 제1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항들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는 제11조의3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로 본다.

제15조 앞의 “제6장 감독·검사”를 “제7장 감독·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5조의4 또는 제8조”를 “제5조의4, 제8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또는 제11조의5”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제4조·제4조의2·제5조·제5조의2·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를 “제4조·제4조의2·제5조·제5조의2·제5조의3·제5조의4·제11조의2·제11조의3 또는 제11조의5”로 한다.

제16조 앞의 “제7장 벌칙 등”을 “제8장 벌칙 등”으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을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에 따른 임시정지·거래정지·이의신청·손실보상과 관련된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거래 정지등의 해제를 신청한 자 또는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한 자

제17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조의2제8항(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제2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조의3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20조제2항제1호 중 “제4조제1항제1호·제2호”를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4. 제11조의2제4항·제6항 또는 제1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조치 또는 조치의 연장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금융거래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래정지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정지의 요청 및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의 요구는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임시정지를 요청하거나 거래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출금을 차단하는”을 “출금을 차단(「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1조의3에 따라 차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제3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제3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u>“중대민생침해범죄등”이란</u> <u>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생계유</u> <u>지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거</u> <u>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u> <u>죄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u> <u>범죄행위를 말한다.</u> <u>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u> <u>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u> <u>법률」 제19조제1항제1호,</u> <u>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범</u> <u>죄, 「채권의 공정한 추심</u> <u>에 관한 법률」 제15조제</u> <u>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u> <u>호·제3호의 범죄</u> <u>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u> <u>법률」 제58조, 제58조의</u> <u>2,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u> <u>의 범죄, 「마약류 불법거</u> <u>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u>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
까지, 제12조의 범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범죄

다. 「형법」 제247조의 범
죄, 「게임산업진흥에 관
한 법률」 제44조제1항의
범죄,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및 제48조제
3호·제4호의 범죄

라. 「형법」 제347조, 제347
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
만 해당한다)의 범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범죄

1) 「형법」 제114조에 따
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
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

로 기망(欺罔)하여 범행
한 경우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
급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
신금융사기의 방법으로
범행한 경우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마. 「형법」 제347조, 제347
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
만 해당한다)의 범죄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을 이용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타인을 기망(欺
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
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
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
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

행위

1) 자금을 송금·이체하도
록 하는 행위

2)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3)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
부하도록 하는 행위

4)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
금하도록 하는 행위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범
죄에 관계된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자금세탁
행위

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
17조제2항의 범죄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제5항의 범죄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

다.

1. (생략)

2. 제4조 · 제4조의2 · 제5조 · 제5조의2 · 제5조의3 · 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 7. (생략)

② ~ ④ (생략)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③ ~ ⑦ (생략)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

1. (현행과 같음)

2. 제4조 · 제4조의2 · 제5조 · 제5조의2 · 제5조의3 · 제5조의4 · 제8조 · 제11조의2 · 제11조의3 및 제11조의5-----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금융거래등의 상대방과 관련하여 제11조의3에 따른 거래정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②·③ (생략)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1조의2에 따른 임시정지
(그 연장을 포함한다) 및 제11조의3에 따른 거래정지(그 연장을 포함한다) 조치 및 그
해제에 관한 자료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
불법재산·중대민생침해범죄등
·자금세탁행위-----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1. · 2. (생략)

<신 설>

3. (생략)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
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
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

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③ 삭 제

④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 ⑫ (생략)

제10조의2(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제10조에 따라

[illegible]

④

제1항 제4호

⑤ ~ ⑫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제
공사실의 통보) ① -----

-----제10조
제1항제4호-----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5장 보칙

<신설>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장 범죄 계좌등에 대한 거래정지등

제11조의2(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한 계좌·가상자산계정에
대한 임시정지) ① 수사기관의
장은 특정 계좌·가상자산계정
(당해 계좌·가상자산계정 또는
계좌·가상자산계정 명의인
으로부터의 자금의 이체, 송금
또는 출금 등으로 자금·자산
이 이전된 것으로 판단되는 계
좌·가상자산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1조의6까지
및 제13조에서 같다)이 중대민
생침해범죄등(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제외한다)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한 불법이익은닉 방지 등을 위해 긴급한 경우 해당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에 이체, 송금, 입·출금 또는 가상자산의 이전 등 거래를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정지”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된 자금·자산 및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가상자산계정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정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은 다른 금융회사등의 계좌·가상자산계정으로 중대민생

침해범죄등과 관련된 자금·자산이 송금·이체 또는 이전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시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요청의 대상이 된 계좌·가상자산계정에 대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중대민생침해범죄등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계좌·가상자산계정에 대하여 임시정지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임시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1. 해당 계좌·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

2. 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된 자금·자산이 송금·이체

된 계좌·가상자산계정이 있
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금융
회사등

3. 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회
사등에 통지된 피해자가 있
는 경우 해당 피해자

4. 제1항에 따라 임시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

5. 금융정보분석원장

⑤ 제4항에 따른 임시정지 조
치의 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하여 임시정
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임시정지 조치가 있는 날로부
터 7일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3
0일의 범위에서 2회에 한정하
여 임시정지 조치의 연장을 요
구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요구의 대
상이 된 계좌·가상자산계정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임시정지 조
치를 연장하여야 하고, 그 사
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임시정지 조치의 연장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1. 해당 계좌·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

2. 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된 자금·자산이 송금·이체된 계좌·가상자산계정이 있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3. 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지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4. 제1항에 따라 임시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

5. 금융정보분석원장

⑦ 수사기관의 장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에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통지를 유예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3항에 따른 요청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임시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7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제5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 임시정지 조치 또는 그 연장 조치를 하여 계좌·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임시정지의 대상, 범위, 요건,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신 설>

관련한 계좌·가상자산계정에 대한 거래정지)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거래등이 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대민생침해범죄등으로 인한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하여 금융거래등을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등이 일어난 계좌·가상자산계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에 이체, 송금, 입·출금 또는 가상자산의 이전 등 거래를 정지하는 조치(이하 “거래정지”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하여 거래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매회 30일의 범위
에서 거래정지의 연장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정
지의 총 기간은 18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
은 요구의 대상이 된 계좌·가
상자산계정에 대하여 지체 없
이 거래정지 조치 또는 조치의
연장을 하여야 하고, 그 사실
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거래정지 조치에 관한 사
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1. 해당 계좌·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

2. 금융정보분석원장.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거래정
지 요구가 제2항에 따른 수
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지받은

내용을 해당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 또는 조치의 연장과 관련하여 통지의 유예 및 금융회사등 종사자의 누설 금지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시정지”는 “거래정지”로 본다.

⑥ 수사기관의 장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임시정지 조치된 계좌·가상자산계정이 중대민생침해범죄등에 이용된 계좌·가상자산계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해당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거래정지 조치(조치의 연장을 포함한다)된 계좌·가상자산계정에 대하여 검사에게 몰수보전, 기소 전 몰수보전, 추정보전 또는 기소 전 추정보전을

청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52조제1항 또
는 제5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⑧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7항
에 따른 몰수보전, 기소 전 몰
수보전, 추정보전 또는 기소
전 추정보전의 청구가 있었고,
법원이 해당 청구를 기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 단서 후
단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의
총 기간이 1년이 될 때까지 제
3항 단서 전단에 따라 추가적
으로 거래정지의 연장을 요구
할 수 있다.

⑨ 금융회사등이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요구에 따
라 거래정지 조치 또는 조치의
연장을 하여 계좌·가상자산계
정의 명의인 또는 그 밖의 이
해관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
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신 설>

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거래정지의 대상, 범위, 요건,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거래정지등 이후 압류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11조의2에 따른 임시정지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거래정지(이하 “거래정지등”이라 한다)가 된 계좌·가상자산계정에 대한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의5에 따라 거래정지등이 해제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의 제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신 설>

4. 질권(質權)의 설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된 계좌·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과 해당 계좌·가상자산계정이 이용된 중대민생침해범죄 등의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의5(거래정지등의 해제 및 이의신청)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의2제4항·제6항 또는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한 금융회사등에 해당 조치의 일부나 전부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일부나 전부의 해제를 요구하여야 한다.

1. 거래정지등을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이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
2. 거래정지등의 기간이 도과한 경우(거래정지등이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연장기간이
도과한 경우를 말한다)

3. 제4항에 따른 명의인등의
이의신청을 금융정보분석원
장이 수용하여 그 결과를 명
의인등에게 통지한 경우

4. 거래정지등의 대상이 된 계
좌·가상자산계정이 불법이
익 은닉에 사용된 계좌·가
상자산계정이 아니라는 사실
이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소
명되는 경우

5. 거래정지등의 대상이 된 계
좌·가상자산계정 내의 자금
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
득한 것이거나 중대민생침해
범죄등과 관련이 없다는 사
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소명되는 경우

6. 그 밖에 거래정지등을 유지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요구의 대상이
된 계좌·가상자산계정에 대하
여 지체 없이 거래정지등의 조

치를 해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거래정지 조치 해제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1. 해당 계좌·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

2. 금융정보분석원장(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계좌·가상자산계정에 대해 거래정지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3.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지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4. 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된 자금·자산이 송금·이체된 계좌·가상자산계정이 있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③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거래정지등의 조

치가 이루어진 계좌·가상자산
계정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조치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다
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거
래정지 조치 해제에 관한 사실
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거래정지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2. 거래정지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3. 거래정지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질권(質權)이 설정된 경
우

4. 거래정지등의 조치가 이루
어진 후에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계좌·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과 해당 계좌·가상자
산계정이 이용된 중대민생침해
범죄등의 피해자 간에 채
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상자산계정에 예치된 금액 중 중대민생침해범죄등의 피해금으로 다툼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거래정지등의 대상이 된 계좌·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명의인등”이라 한다)는 거래정지등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등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를 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을 받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제11조의2에 따른 임시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또는 임시정지 기간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신 설>

를 명의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거래정지등의 해제 및 이의 신청의 절차,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6(거래정지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거래정지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거래정지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계좌·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으로서 해당 거래정지등의 원인이 되는 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하여 법원의 무죄판결 확정, 검사의 혐의없음·죄가 되지 아니함·

증거가 없음의 불기소처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등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

2. 제1호의 명의인이 아닌 자로서 제1호에 따른 거래정지 등의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해당 거래정지등의 원인이 되는 중대 민생침해범죄등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거래정지등의 해제를 안 날부터 3년, 거래정지등의 해제일부터 5년간(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판결·처분·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판결·처분·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1조의2 또는 제11조의3에 따라 거래정지등 조치가 이루어진 계좌·가상자산계정 또는 그 명의인에 대해 금전채권

또는 기타 재산상의 청구권을
갖는 자는 해당 계좌·가상자
산계정을 개설·관리하는 금융
회사등에 대해 거래정지등의
해제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
구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
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손실보
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하거
나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⑥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
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보상금의 산정·지급·
통지·환수, 손실보상심의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

<신 설>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7(거래정지등 전담부서
의 설치·운영 등) ① 금융정
보분석원장은 중대민생침해범
죄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
인 거래정지등 업무 수행을 위
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거래정
지등 전담부서(이하 이 조에서
“거래정지등 전담부서”라 한
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거래정지등 전담부서는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금
융회사가 보고한 정보에 대
한 분석

2. 제11조의2에 따른 임시정지
의 계속 필요성 검토 및 임
시정지 조치의 연장 요구

3. 제11조의3에 따른 거래정지
의 필요성 검토 및 거래정지
의 요구 및 연장,

4. 제11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
의 접수 및 검토, 거래정지등
의 해제 요구

5. 제11조의6에 따른 손실보상
의 검토 및 처리, 소실보상심

의위원회의 운영

6. 제13조에 따른 거래정지등
과 관련한 금융회사등 및 수
사기관의 장과의 협조 및 정
보교환

7. 그 밖에 중대민생침해범죄
등 대응 및 거래정지등에 필
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거래정
지등 전담부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계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법
인·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
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제11조의2에 따른 임시정
지, 제11조의3에 따른 거래정
지 및 제11조의5에 따른 이의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소속으로 거래정지심의위원회
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거래정지심의
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장과

<u><신 설></u> 제12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및 제10조제8항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략)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	<u>거래정지등 전담부서의 장을 포함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u> ⑥ 그 밖에 거래정지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사항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6장 보칙</u> 제12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① ----- ----- ----- -----정보,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에 따른 임시정지·거래정지·이의신청·손실보상과 관련된 정보, 제13조----- -----이 법에서 별도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 1. ~ 6.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서 별도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
--	--

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④ (생략)

제13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제10조제1항제3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9조에 따라 보고·통보받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자료(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③ (생략)

<신설>

고는 제1항-----
-----정보, 제11조의
2부터 제11조의6까지에 따른
임시정지·거래정지·이의신청
·손실보상과 관련된 정보, 제
13조-----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제10조제1항제4호---

-----.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1조
의2부터 제11조의6까지에 따른

<신 설>

임시정지, 거래정지, 이의신청 및 손실보상에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금융회사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에 따른 거래정지, 임시정지, 이의신청 및 손실보상에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수사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사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1.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⑥ 금융회사등, 금융정보분석
원장, 수사기관의 장은 제11조
의2·제11조의3·제11조의5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대민생침해범죄등에 이
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
가상자산계정, 그 거래내역 및
명의인에 관한 정보를 「전기
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
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에 따른 정보공유분
석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보
공유분석기관”이라 한다)에 정
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
고 제공할 수 있다.

⑦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6항
에 따라 제공받거나 자신이 분
석·생성한 정보를 금융정보분
석원장에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
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제공의 요청이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2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생략)

<신설>

보의 제공 및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선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⑨ -----제7항-----

-----.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가상자산계정 등에 대하여 제11조의3에 따라 거래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상자산계정의 명의인

의 채권에 관한 소멸 및 피해
환급 절차 등과 관련하여 「전
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
법」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를 적용한
다. 이 경우 해당 조항들에 따
른 “지급정지 조치”는 제11조
의3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로
본다.

제6장 감독·검사

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검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
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
2, 제5조의3, 제5조의4 또는 제
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
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금융회사등의 업무
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⑨ (생략)

제15조의2(외국 금융감독·검사
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① 금
융정보분석원장(이하 이 조에
서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

제7장 감독·검사

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검사
등) ① -----

-----제5조의4, 제8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또는 제
11조의5-----

-----.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외국 금융감독·검사
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① ---

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제4조·제4조의2·제5조·제5조의2·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감독·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의 법령(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목적·범위 등을 밝혀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감독·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감독·검사자료를 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7장 벌칙 등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조 · 제4조의2
· 제5조 · 제5조의2 · 제5조의3
· 제5조의4 · 제11조의2 · 제11
조의3 또는 제11조의5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장 벌칙 등

제16조(벌칙)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

3. (생략)

제17조(벌칙) ① (생략)

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1. (현행과 같음)

2. -----
-----알게 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에 따른 임시정지·거래정지·이의신청·손실보상과 관련된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3. (현행과 같음)

제1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2. (생략)

<신 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
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
함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거래정지등의 해제를
신청한 자 또는 제11조의6제
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한
자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의2제8항(제11조의3제
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제20조(과태료) ① -----

-----.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u>제4조제1항제1호·제2호</u> 또는 <u>제4조의2제1항·제2항</u>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3. (생략) <u><신설></u> <u><신설></u> ③ <u>제1항 및 제2항</u>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징수한다.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11조의3제4항</u> 본문을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현행과 같음) ② ----- ----- -----. 1. <u>제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u> ----- ----- ----- 2. 3. (현행과 같음) 4. <u>제11조의2제4항·제6항</u> 또는 <u>제11조의3제4항</u>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③ <u>제1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u> 본문을 위반하여 조치 또는 조치의 연장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u>----- ----- ----- -----.
--	--